

# 게시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311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결산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결산서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2억원이상"을 "5천만원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5인이상"을 "3인이상"으로,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30억원이상"을 "10억원이상"으로 한다.

제3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의 제7호 및 동표의 기술분야란의 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

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고, 동표의 기술분야란의 제7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기초기술분야 산업기술분야 공공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中小企業創業支援法施行令 改正理由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整備計劃에 따라 中小企業相談會社의 登録要件 및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의 結成要件을 緩和하고,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의 投資制限 및 中小企業相談會社의 結算報告義務를 廢止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가 創業者에 대하여 投資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당해 創業者가 발행하는 株式 또는 資本金 總額의 100分の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廢止하여 創業者가 資金調達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13條 削除)

나. 종전에는 中小企業相談會社로 登錄하기 위하여는 納入資本金 2億圓 이상, 專門人力 5人 이상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納入資本金 5千萬圓 이상, 專門人力 3人 이상만 갖추면 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

다. 中小企業創業 및 振興基金의 지원을 받은 中小企業相談會社로 하여금 決算報告書를 中小企業廳長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義務를 廢止하여 中小企業相談會社의 부담을 덜어 줌(現行 第17條 削除).

라. 종전에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을 結成하기 위하여는 納入資本金이 30億圓 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納入資本金이 10億圓 이상이면 되도록 함(令 第18條第1項).

<법제처 제공>

산업자원부령 제49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법인은 법인설립

립등기일에, 개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에 창업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된 기업인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당해 기업의 사업연도에 상당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권리 등을 이용한 사업화의 정도에 관한 기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화의 정도는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 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 기업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당해 기업의 사업 연도에 상당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매출액: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2. 수출액: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25이상인 경우
- 제3조의2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7. 원자력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8.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9.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1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의 2의 규정  
에 의한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의 성과를 기업  
화하는 사업

제4조 제4호중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  
에 관한 법률"을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  
률"로 하고, 동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  
률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제4조의2제1항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  
16조의4제3항"으로, "벤처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벤처기업의 기술력, 재무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 등)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공장  
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배치도

3.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

공장을 설치하는 자는 당해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절차)"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중소기  
업청장 또는 특허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❷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안에 실험실공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이 개정(1998. 12. 30. 법률 제5607호)됨에 따  
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광사업중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  
가 높은 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기초과학  
연구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건설신기  
술을 이용하는 사업과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  
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을 벤처기업에 포함  
시키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  
단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지원시설에 포함시켜 벤  
처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 제공>